

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(앞쪽)

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①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② 법인등록번호     |      |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
| ③ 법인명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④ 전화번호       |      |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
| ⑤ 대표자 성명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
| ⑥ 법 인 구 분            | 1.내국 2.외국 3.외투 | ⑦ 종류별 구분 | 중소기업         | 일반기업 |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| 중견기업 | 상호출자제한기업   | 그 외 기업  | 당기순이익과세 |
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영리법인     | 30           | 73   | 83         | 93      |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비영리법인    | 60           | 74   | 84         | 94      | 50      |
| ⑧ 소재지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
| ⑨ 업태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⑩ 종목         |      |            | ⑪ 주업종코드 |         |
| ⑫ 사업연도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⑬ 직전 사업연도 월수 | 개월   | ⑭ 예납기간     |         |         |
| ⑮ 수입금액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⑯ 신고일        |      |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
| ⑰ 신고납부 구분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1. 정기 신고     |      | 2. 기한 후 신고 |         |         |
| ⑱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1. 해당        |      | 2. 미해당     |         |         |
| ⑲ 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1. 해당        |      | 2. 미해당     |         |         |

신고 및 납부세액의 계산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|
| 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분              | 법 인 세             |  |
| ①<br>직전 사업연도<br>산출세액 기준<br>(「법인세법」 제63조의2제1항제1호)   | 직전<br>사업연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인세 | ⑩ 산 출 세 액      | 01  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⑪ 공 제 감 면 세 액  | 02  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⑫ 가 산 세 액      | 03  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⑬ 확정세액(⑩-⑪+⑫)  | 04  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⑭ 수 시 부 과 세 액  | 05  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⑮ 원 천 납 부 세 액  | 06  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⑯ 차감 세액(⑬-⑭-⑮) | 07  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⑰ 중 간 예 납 세 액 [⑯× $\frac{6}{\text{직전 사업연도 월수}}$ ] |     | 09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⑱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11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⑲ 차 감 중 간 예 납 세 액(⑰-⑱)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12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미납세액, 미납일수, 세율)<br>⑳ 가 산 세 액                     |     | 13             | ( , , 2.2/10,000)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㉑ 납 부 할 세 액 계(⑲+㉑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14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㉒ 분 납 세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15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|
| ㉓ 납 부 세 액(㉒-㉓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6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|
| ②<br>해당 중간예납기간<br>법인세액 기준<br>(「법인세법」 제63조의2제1항제2호) | ㉔ 과 세 표 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31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㉕ 세 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32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㉖ 산 출 세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33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㉗ 공 제 감 면 세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34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㉘ 가 산 세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42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㉙ 수 시 부 과 세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35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㉚ 원 천 납 부 세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36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㉛ 중 간 예 납 세 액(㉚-㉛+㉙-⑲)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37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㉜ 납 부 할 세 액 계(㉛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39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㉝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43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|
| ㉞ 분 납 세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0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|
| ㉟ 납 부 세 액(㉞-㉟-㉚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1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|

대표자

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붙임 서류 | 1. 재무상태표, 2. (포괄)손익계산서, 3. 세무조정계산서, 4.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97조제5항에 따른 서류 (전자신고의 경우에는 1. 표준재무상태표, 2. 표준손익계산서, 3. 세무조정계산서, 4.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97조제5항에 따른 서류)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
## 작성 방법

1. ㉔ 사업연도란: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과 사업연도 종료일을 적습니다.
2. ㉕ 예납기간란: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의 기간이며, 합병·분할에 의하지 않은 신설의 경우에는 설립 후 최초 사업연도를 제외합니다.
3. ㉖ 업태란·㉗ 종목란: 주된 업태·종목을 적습니다.
4. ㉘ 수입금액란: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수입금액을 적습니다.
5. ㉙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란: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(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은 제외합니다)에 해당하는 경우 "1. 해당"에 체크합니다.
6. ㉚ 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란: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(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42조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)에는 "1. 해당"에 체크하며,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"2. 미해당"에 체크합니다.
  - 가.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%를 초과할 것
  - 나.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 중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대여로 인하여 발생한 금액, 「소득세법」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금액 및 「소득세법」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금액의 합계가 50% 이상일 것
  - 다.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
7.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적용 법인
  - 가. ㉛ 산출세액란: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(별지 제3호서식)상의 ㉞ 산출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. 다만, 수정신고, 결정 또는 경정의 경우에는 수정신고된 산출세액, 결정 또는 경정된 산출세액을 적습니다.
  - 나. ㉜ 공제감면세액란: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을 적으며, 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합니다.
  - 다. ㉝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란: 해당 중간예납기간 중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26조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을 적습니다.
 

※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중간예납세액(㉞)이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32조에 따라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은 차감하지 않습니다.
  - 라. ㉞ 가산세액란: 기한 후 신고·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 동안 1일 2.2/10,000(다만, 2019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3/10,000을 적용하고, 2019년 2월 12일부터 2022년 2월 14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2.5/10,000를 적용합니다)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.
8. 해당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 적용 법인
 「법인세법」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(별지 제3호서식)의 작성방법을 준용합니다.
9. 붙임 서류는 「법인세법」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법인만 해당합니다.